

로타리와셔기가 원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로타리와셔기가 원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 내지 제69조에서 원심기의 안전조치를 규정한 입법취지는 근로자가 회전하는 원심기의 드럼또는 내용물의 비산등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임.

동규정에서는 원심기의 정의 및 회전수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원심기의 정의는 원심력(주:원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의 힘으로 일반적으로 회전의 중심에서 멀어지려는 힘)을 이용하여 일련의 작업을 행하는 기기로서 원심기에 의한 재해위험의 정도는 회전수보다는 작업조건과 원주속도(직경과 회전수에 비례함)가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회전수가 적은 원심기라 할지라도 안전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

실제 원심기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분리, 추출등을 하여야 하므로 제조업체마다 원심기의 기종, 특성, 형태 및 사용목적 등에 적합한 원주속도나 회전수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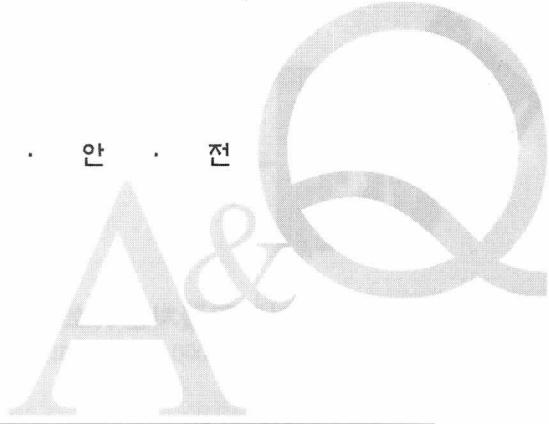
따라서 로타리와셔기의 작업공정(정련, 세탁, 탈수 등)중 원심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고압과 배팅(BEATING)효과만을 응용하여 순수한 원단축 소작업만 한다면 원심기로 볼수 없으나 원심력에 의한 세탁, 탈수등의 작업공정이 있고 원단을 꺼내는 작업방법(로타리와셔기의 압력이 제거 되고 결통을 개방한 후)이 회전하는 원통의 개구부에 근로자가 직접 접촉하여 수작업으로 내용물을 꺼내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원심기로 보아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재검사 불합격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판매가능 여부**재검사 불합격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역화방지기)의 판매가능 여부**

위 역화방지기는 3년에 1회 재검정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여 검정이 취소된 것이고 최근 검정을 받은 '91.2. 9 이후 3년이 도래하기전인 '93.3이후 생산을 중단한 상태로 이전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판매를 할수

있음.

재검정을 받는 것은 불량 방호장치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검정을 받아 불합격하였거나 재검을 받지 아니하여 불합격한 경우 그 전에 만든 방호장치까지도 판매를 중지함이 타당함.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 여부



공장(45명)과 본사(40명)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본사와 공장이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업장현황

공장이 경기도 파주군에 소재하고 있고 본사가 서울에 있을 경우 공장의 인원이 약 45명, 본사의 인원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장은 전기담요를 생산하기 위한 전자 제품조립과 봉제업을 겸하고 있는 사업장이고 본사는 공장과는 전혀 무관하게 수출 및 영업, 경리, 세무 업무 등만을 행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동법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열거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

이므로 본사와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각각이 보건관리자 선임단위가 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별표1의 제6호 규정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다.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폐사에서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주한 ○○국가공단 개발산업(공업단지 제○공구)조성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환경법 제28조 제8항의 비산먼지방지를 위한 조치로 가작업로를 아스팔트콘크리트로 포장하였을 때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표준안전관리비)에서 정산가능 한지



료됨.

건설공사 현장의 작업수행상 필요한 가작업로를 설치하고 비산먼지방지를 위한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공사내역서상의 가설공사 항목 등에 계상되는 가설물 및 부대시설 설치 등의 비용으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불가하다고 사